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 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바.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사.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아.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가 개정되어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45조제1항)

타.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77조제2항제5호 신설)

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1.6. ~ 12. 18., 2024.2.26, ~3.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완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제4호”를 “법 제10조제2항제5

호”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도
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
조의2,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
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자막, 점자자료, 보조기기·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
다.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
다.

1. 명칭
2. 유형·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8. 운영규칙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그 밖에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 인정) 학습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 또는 학력 인정 절차, 방식 및 기준에 따른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관련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및 기관별 배치 현황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의 체계성
 - 나.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내용의 적합성
 - 다. 교재 등 교육자료 구비의 적합성
3. 기획, 운영 및 기반 구축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 성과의 우수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그 밖에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⑤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만 16세”를 “16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의”를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45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를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학생 및 학적부”를 “학적부”로 한다.

3. 재학생 보호방안

제5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제5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 업무는 「한국사학진

홍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로 한다.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1명”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1명”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5명”을 “1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자해득”을 “문해”로 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①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취소를 명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1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경우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7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제77조제3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별표 3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은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별표 9 “가”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나”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2”에서 “법 제46조제1항제3호”로, “다”의 “법 제32조제4항”을 “법 제32조제5항”으로, “다”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라”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마”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바”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사”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아”의 근

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자”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46조제1항
제4호”로, “차”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법 제4
6조제1항제5호”로, “카”의 근거 법조문을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서 “법 제4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5년도 시행계획의 수
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 정보공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23조의3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횟수	공시 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 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5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전체	연 1회	5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현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전체	연 1회	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5.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6.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7. 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전체	연 1회	5월
8.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건관리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전체	연 1회	5월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요강	전체	수시	수시
	나. 입학생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연 1회	5월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11.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도서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직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별표 11]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23조의3제2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전체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전, 원	수시	수시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원	연 1회	6월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원	연 1회	6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전, 원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전, 원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전, 원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원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원	연 1회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전체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전, 원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전, 원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전, 원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전, 원	연 1회	8월

8.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전,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전,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적립금 현황	전, 원	연 1회	(결산) 8월
	사. 기부금 현황	전, 원	연 1회	(결산) 8월
	아.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원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자. 등록금 현황	전, 원	연 2회	4월, 8월
	차.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카.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 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 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원	연 1회 이상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원	연 1회	8월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 조에 따른 행정처 분, 지도·감독, 벌 칙, 과태료 등에 관 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평생교육시설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전, 원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 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전, 원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전, 원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전체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전, 원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전, 원	연 1회	6월

	자.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원	연 1회	6월
	차.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원	연 1회	6월
	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원	연 1회	6월
	타.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원	연 1회	6월
	파.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원	연 1회	6월
	하.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원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전, 원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전, 원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전체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전체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전체	연 1회	8월
	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원	수시	수시
	자. 강사 강의료	전, 원	연 1회	6월
	차.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전, 원	연 1회	8월
	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타.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파. 안전관리 현황	전, 원	연 1회	10월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은 ‘전’,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원’으로 표기하며, 전체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별표 12]

기타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23조의3제3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연 1회	5월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연 1회	5월
3. 교육과정	연 1회	5월
4. 교육과정별 정원	연 1회	5월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연 1회	5월
6. 학습비	연 1회	5월
7.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연 1회	5월

비고

1. “기타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한다.

* “7.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항목”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명단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신 설></u>	④ <u>교육부장관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u>
<u><신 설></u>	⑤ <u>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u>

<신 설>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생략)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청각 장애 등 장애

제12조의2 (생략)

<신설>

<신설>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자막, 점자자료, 보조기기·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의3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1. 명칭
2. 유형·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8. 운영규칙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

제12조의3 (생략)

<신설>

제14조의3·제14조의4 (생략)

<신설>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그 밖에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12조의6 (현행 제12조의3과 같음)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 인정)

학습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 또는 학력 인정 절차, 방식 및 기준에 따른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와 같음)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및 기관별 배치 현황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신 설>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와 관계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의 체계성

나.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내용의 적합성

다. 교재 등 교육자료 구비의 적합성

3. 기획, 운영 및 기반 구축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 성과의 우수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

<신 설>

중 문서,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
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
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
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
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그 밖에 평가 또는 인증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
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
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0
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
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⑤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
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
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
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
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
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
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
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
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

1. 16세-----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신설>

② (생략)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

----- 폐쇄예정일 30
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

1. 2. (현행과 같음)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

-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생략)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생략)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학교법인

3. (생략)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자) -----

-----.

1. (현행과 같음)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현행과 같음)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폐쇄신고)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

----- 1명 -----
-----.

1. ~ 3. (생략)

② (생략)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

----- 1명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

----- 1명 -----

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생 략)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68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문해교육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 문해교육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

18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문해 -----
-----.

제76조의3(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①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취소를 명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재학생 보호방안
-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1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경우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설>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0조의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u>항 관리</u>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u> <u>12.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u>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락처	(044) 203 - 6384